EMBRAIN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21.09

Contents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진행 과정
3. 하도급 거래 설명

0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목적 및 배경
2. 하도급거래의 개념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1.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목적 및 배경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란?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 하도급 생태계의 현황 파악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시장/기업/관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하도급 생태계를 파악하는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다양한 거래 양상, 불공정 행위 조사 : 업종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다양한 거래 양상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거래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마련

사업 배경

- '하도급'은 그 업에 따른 일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71%, 매출액 기준 83%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근간이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음.
-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 중이나 전체 사고건수 중 하도급 관련 건수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지속적인 하도급 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

법적 근거

- 하도급법 제22조의2
  -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

2. 하도급 거래의 개념

▪ 1. 하도급 거래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임. (법 제2조 제1항)
- 간단히 말하면, 어떤 회사가 그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임. 그 회사보다 큰 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는 하도급이 아니며, 이 때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함)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하도급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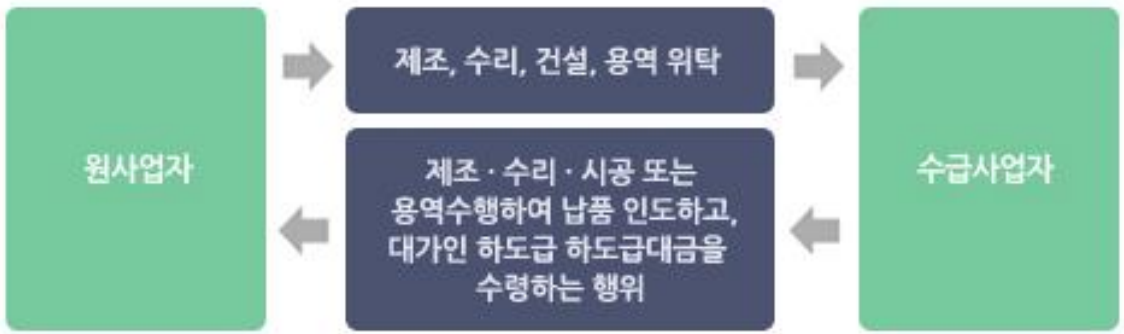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수리 위탁 제외

< 하도급 거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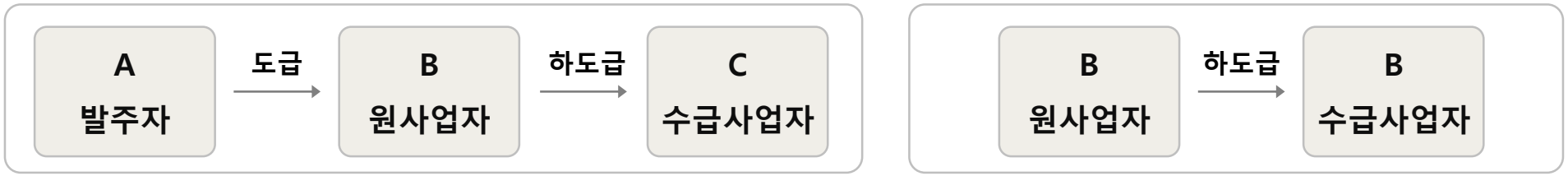

2. 하도급 거래의 개념

▪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	이것을 다시 위탁

※ 원사업자 자신의 업(業)에 따른 제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사업자간 위탁 행위)

※ 건설 분야의 경우 관련 면허 등 보유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단, 경미한 공사에 대한 예외 있음)

※ 업무 범위는 반드시 주된 사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자

- 연간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에도 업종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아야 하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이상 지분 소유시 제외

<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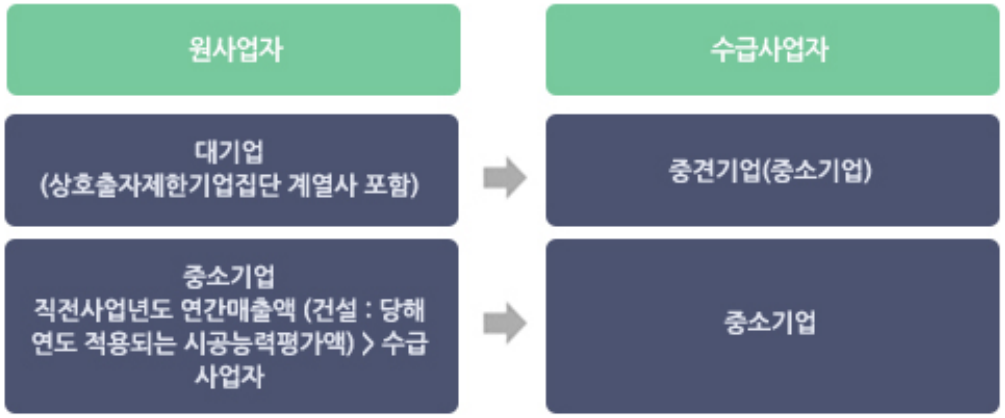

※ 법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자)**
- **수급사업자 : 중견기업(중소기업)**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 원사업자 대상제외 ('21.1.12. 이전 계약분까지)

- **제조** 위탁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용역** 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건설** 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건설업) : 연간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중소기업자(제조업) : 연간매출액 1,500억 원(세부 업종별 차이 있음)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 1. 수행과정

-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원사업자 선정 」→「(원사업자)공문 및 조사표 발송」→「원사업자 조사」→「수급사업자 선정」→「(수급사업자)공문 및 조사표 발송」→「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분석」→「자진시정 독려」의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 본 사업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조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통합상담센터를 구축함.

수행 과정

원사업자 선정
- 업종별로 원사업자 표본 선정
- 업종
  - 제조업
  - 용역업
  - 건설업

→ **(등기 발송) 원사업자 조사**
- 선정된 대상 기업에게 등기를 발송
- 등기 내용
  - 공문 및 조사표
  - 안내 자료
  - 관리 및 접속코드 (로그인)

→ **수급사업자 선정**
- 선정된 원사업자가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수급사업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기업 선정
- 업종 (원사업자와 동일)

→ **(등기 발송) 수급사업자 조사**
- 선정된 수급사업자 대상 기업에 등기를 발송
- 등기 내용 (원사업자와 동일)

→ **자진 시정 독려**
-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업자 검출
- 자진시정 촉구

→ **자료 취합 및 분석** → **국가통계포털 등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DB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 2. 조사내용 및 시기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위탁 종류 및 업종별로 원사업자 표본을 선정하고,
  원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수급사업자 명단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조사 시기

- 조사 시기 : 2021년 7월 ~ 11월
  - **원사업자 조사 기간 : 7월 26일 ~ 8월 20일**
  - 원사업자 추가 조사 기간 : 8월 21일 ~ 8월 27일
    (수급사업자 선정 : 8월 30일 ~ 9월 10일)
  - **수급사업자 조사 기간 : 9월 16일 ~ 10월 13일**

조사 기간 중
통합상담 지원센터 운영

조사 대상

구분	제조업	용역업	건설업	계
원사업자	7,000	2,500	500	10,000
수급사업자	63,000	22,500	4,500	90,000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 거래 현황 등 (업종별 상이)

분야	조사 내용
하도급 거래 현황	• 하도급 업체수, 하도급 거래금액 • 수급사업자 선정방식, 결제수단별 거래규모 • 계약서면 교부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	•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단가인하 실태 • 위탁취소·변경 •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경영간섭행위 실태 등
전속거래·PB 제품 분야 하도급 거래실태	• 전속거래 여부 및 목적 • 전속거래 기간·업체 수 • PB 분야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 등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 3배 손해배상 제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 기술탈취 행위 시효 연장 등
만족도 조사	•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 하도급정책 만족도 등

0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과정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0. 등기 발송 형태

- 조사 대상 수급사업자에게 등기를 발송함.
- 등기는 1. 조사 홈페이지, 관리번호, 접속코드와 기업명이 적혀있는 표지와 2. 공문, 3. 실태조사 입력과 전송 방법 관련 안내문(경품 이벤트 포함), 4. 업종별 설문지가 발송됨. (건설의 경우 5. 안내책자가 추가로 발송됨)

보내는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조사수행 대행업체)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4층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반송불요

서청주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redacted]
[redacted]
대표(이사) 귀하
61107
출력번호 : 1000421
* 담당자에게 전달시 모두(봉투포함) 전달하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공문 등이 들어 있습니다. 즉시 접수하여 대표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1. 등기 표지

- 첫 페이지에는 홈페이지와 기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접속코드가 기재되어 있음. (봉투에서는 기업명과 주소만 보임)
- 기업은 관리번호와 접속코드를 이용해 조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수 있음.

※ 봉투 오픈시에 접속코드 확인 가능

홈페이지 : Http://hado.ftc.go.kr
관리번호 : [redacted]
접속코드 : [redacted]

원사업자명 : [redacted]

[redacted]
[redacted]
대표(이사) 귀하
출력번호 : 1000421
61107
* 담당자에게 전달시 모두(봉투포함) 전달하십시요.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2. 조사 공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음.
- 공문 안에는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주의사항, 상담센터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음.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수급사업자
(경유)
제목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1. 우리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매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 대해 실시하며, 1만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하도급거래 실태를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인 귀사**를 대상으로 해당 원사업자와의 **2020.1.1.~2020.12.31.**(목적물 수령일 기준)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방법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제출
   - 제출기간 : **2021.9.16.(목) ~ 2021.10.13.(수) 18시**
   - 관련문의 : **1668-3476 (통합상담센터)** * 수행업체: (주)마크로밀엠브레인

4. 또한, 우리 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관한 설문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제출기간 내 해당 설문까지 응답하고 전송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실태조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이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조사목적 외 사용되지 않으며, 귀사의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사실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전송 안내 1부. 끝.

2-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이배종 기업거래정책 전결 2021.9.7. 과 과장 정창욱
협조자
시행 기업거래정책과-1603 (2021. 9. 7.)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전화번호 02-1668-3476 팩스번호 02-1668-3476 / hado.ftc.go.kr / 대국민 공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2

*** 공문 하단의 전화/Fax 번호 02-1668-3476은 실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1668-3476으로 연결해야 함)**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3. 조사 입력 및 전송 안내문

- 조사표 입력(작성) 및 전송 방법과 참고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경품 이벤트 등)
- 관련하여 문의할 통합상담센터 대표번호와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QR코드가 안내되어 있음.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전송 안내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4.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및 전송
   (2) 귀사의 일반현황 → (3) 하도급 거래현황 → (4) 조사표 전송
   ※ 조사표(2번 및 3번 메뉴) 입력 후,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의**"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가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5. **「추가 설문」**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전송
   ※ 조사표(2번 및 3번 메뉴) 입력 후,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의"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가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경품 응모 이벤트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수급사업자 대상)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래의 경품을 드립니다.

1등 – 갤럭시 워치4 (1명) 2등 – 에어팟 프로 (2명) 3등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800명

- **참여 방법**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 조사 참여 후 조사표 전송 완료를 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에 한하여 자동 응모
- **참여 기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수급사업자) 조사 기간 내

조사 참여 기간 : 2021. 9. 16(목) ~ 2021. 10. 13(수)

갤럭시 워치4 1명

에어팟 프로 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800명

-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기타 참고사항

- 유선상담보다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은 특정 시간에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만약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귀사가 **2020년도 (2020.1.1.~12.31.)***에 있었던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응답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목적물 납품일 또는 인도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 본 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의거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귀사의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귀사가 제출해 주신 내용은 **해당 원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사도 본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 및 응답내용 등을 관련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4. 업종별 조사표

- 업종별로 작성해야 할 설문지가 서면으로 첨부되어 있음. (업종별 상이)
- 서면으로 설문지는 첨부되어 있지만 입력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지정된 원사업자(000)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작성해야 함.

[제조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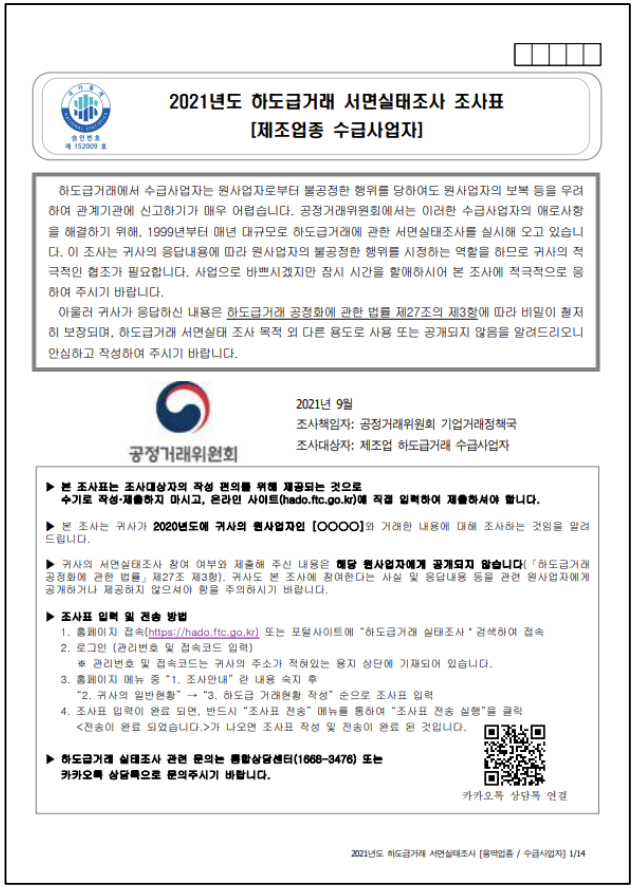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제조업종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원사업자의 보복 등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귀사의 응답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9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제조업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조사는 귀사가 2020년도에 귀사의 원사업자인 [OOOO]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의 서면실태조사 참여 여부와 제출해 주신 내용은 해당 원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귀사도 본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 및 응답내용 등을 관련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1.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2. 귀사의 일반현황" → "3. 하도급 거래현황 작성" 순으로 조사표 입력
4.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용역업종 / 수급사업자] 1/14

[용역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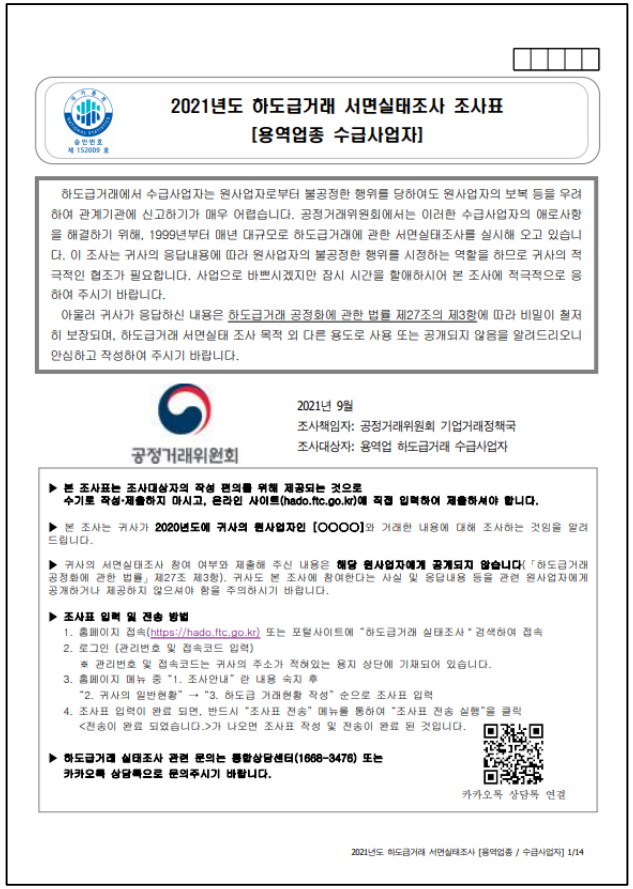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용역업종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원사업자의 보복 등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귀사의 응답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9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용역업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조사는 귀사가 2020년도에 귀사의 원사업자인 [OOOO]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의 서면실태조사 참여 여부와 제출해 주신 내용은 해당 원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귀사도 본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 및 응답내용 등을 관련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1.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2. 귀사의 일반현황" → "3. 하도급 거래현황 작성" 순으로 조사표 입력
4.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용역업종 / 수급사업자] 1/14

[건설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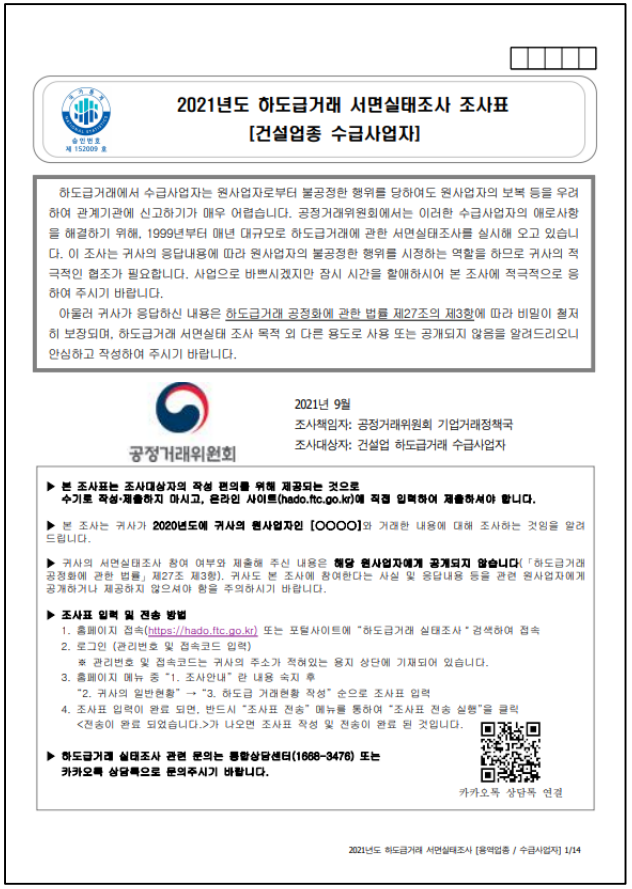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원사업자의 보복 등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귀사의 응답내용에 따라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안심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9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건설업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조사는 귀사가 2020년도에 귀사의 원사업자인 [OOOO]와 거래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의 서면실태조사 참여 여부와 제출해 주신 내용은 해당 원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귀사도 본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 및 응답내용 등을 관련 원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1.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2. 귀사의 일반현황" → "3. 하도급 거래현황 작성" 순으로 조사표 입력
4.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용역업종 / 수급사업자] 1/14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1. 메인페이지

- 등기우편의 표지에 적혀있는 기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접속코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함.
- 홈페이지에는 조사참여기간과 통합상담센터 연결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음. (상담센터 대표번호 1668-3476, 카카오톡 상담 QR코드)
- 그 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홍보영상과 불공정 거래 신고 란이 있음. (불공정 거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보센터로 연결됨)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2.「1. 조사 안내 」탭

-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하단의 다음 단계 탭을 누르면 다음 탭으로 자동 넘어가게 됨.
- 작성한 조사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매 페이지마다 우측 하단에 [화면 인쇄하기] 버튼이 있음.

[1. 조사안내 탭 – 웹 화면 캡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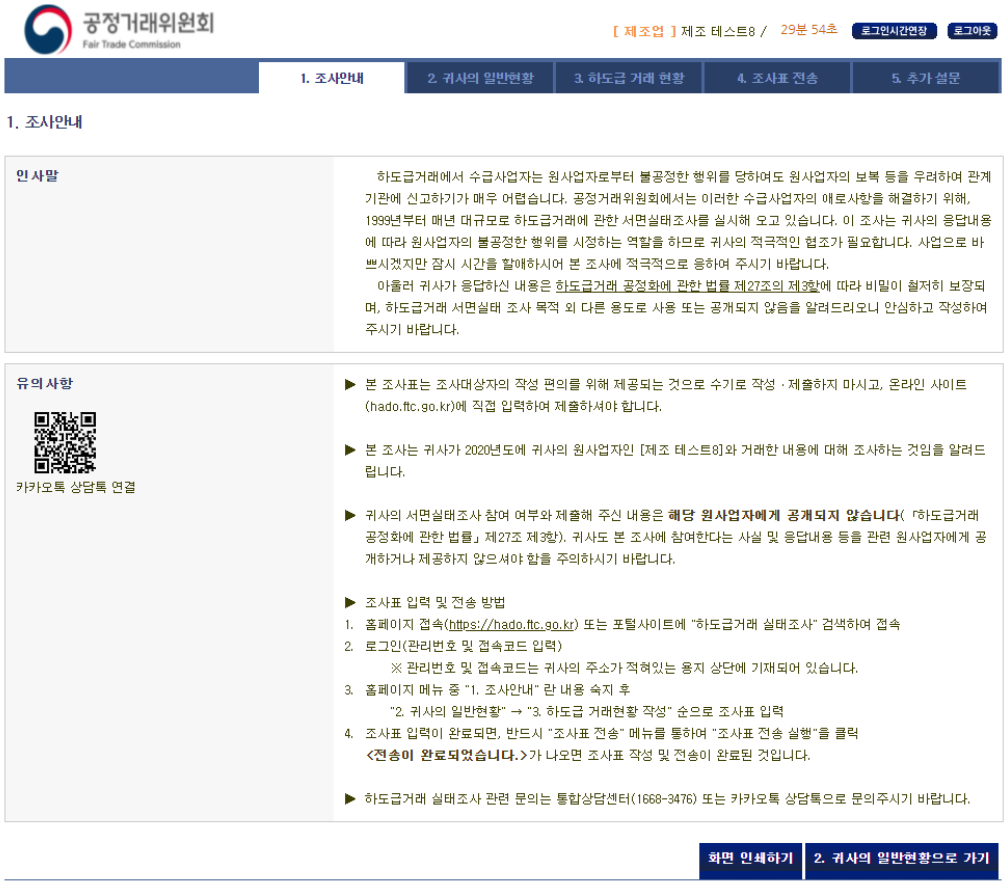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3.「2. 귀사의 일반현황」탭

- 일반현황 페이지에서는 조사 제외 대상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하고, 제외 사유를 기입한 후 전송하여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 1개 기업이 조사대상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한 일반현황 값을 불러올 수 있음.
- 수급사업자의 공통사항인 일반현황만 불러오기 가능하고, 1차적으로 중복은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2. 귀사의 일반현황 탭 – 웹 화면 캡쳐본]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제조업] 제조 테스트8 / 28분 44초 로그인시간연장 로그아웃

1. 조사안내 | 2. 귀사의 일반현황 | 3. 하도급 거래 현황 | 4. 조사표 전송 | 5. 추가 설문

2. 귀사의 일반현황

조사표를 2개 이상 작성하시는 경우 Tip

조사대상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입력하신 귀사 일반현황 정보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하신 정보가 있는 경우 정보를 입력하신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뒤4자리)를 입력 후 [일반현황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관리번호 : | 접속코드 : ****** | 일반현황 정보 가져오기

회사개요
* 회사명은 공백없이 입력
- 입력예시) (주) 회 사 명 (X) —> (주)회사명 (O)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회사명(한글/영문)으로 기입.
* 연간 매출액, 자산총액 단위는 백만원 임
* 소재지는 우편번호 검색 후 상세주소를 추가로 입력하세요.
* 전화번호 입력 예: 02-123-4567 (대표전화 1개 입력)
* 팩스번호 대표번호 1개만 입력.

※ 본 설문조사는 귀사의 재무상황과 하도급거래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ST08	회 사 명	제조 테
법인여부	○법인 ○비법인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 테스트8		
본사	우편번호 : 우편번호찾기		
	소 재 지 : 제조 테스트8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 귀사의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영업 상태는 어떠합니까?
○ 1. 정상영업
○ 2. 기업회생 절차 진행 중
○ 3. 영업중단 중 또는 폐업 진행 중
○ 4. 다른 회사와 합병 진행 중
○ 5. 기타( )

[조사 제외 대상 사유]

조사제외 안내

※ 제외 경우 선택 후 사유 기재

▣ 만일 귀사와 조사대상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가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귀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제외 대상	구체적 사례
① 귀사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귀사가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인 경우 · 귀사가 중소기업이고, 귀사의 연간 매출액(2020년 기준)이 조사 대상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비해 큰 경우
②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 목적물을 판매하는 단순 **매매행위** · 조사대상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등
③ 귀사가 하도급을 주기만 하는 경우	· 하도급을 주기만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수급사업자로 볼 수 없음
④ 하도급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없음)	· 하도급거래가 없는 경우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⑤ 귀사가 폐업한 경우	·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⑥ 기타사유	· (구체적 내용 기록)

▣ **제외대상 항목 선택 (택1)**
○ 1. 귀사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하도급거래가 아닌 경우
○ 3. 귀사가 하도급을 주기만 하는 경우
○ 4. 하도급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없음)
○ 5. 귀사가 폐업한 경우
○ 6. 기타사유( )

※ 귀사가 **위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사제외 대상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장하신 후 **「4. 조사표 전송」**란으로 가셔서 조사표 전송 버튼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4.「4. 조사표 전송」탭

- 조사표 전송 탭에서는 어떤 탭의 조사표를 작성 완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사표 전송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됨.
- 조사표 전송을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전송을 완료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하나 필요하면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수정
- 우측 하단의 [조사표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입력값과 전송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4. 조사표 전송 탭 – 웹 화면 캡쳐본]

[작성 현황]

미작성시

1. 조사안내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2. 귀사의 일반현황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3. 하도급 거래 현황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작성 완료시 (전송가능)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미작성	작성 완료	작성 불필요

[조사표 전송 확인 팝업]

조사표 전송 확인

회사명	
원사업자 대표자명	
우편번호	
원사업자 주소	
원사업자 전화번호	
원사업자 팩스번호	
법인등록여부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E-mail	
작성자	
작성자직위	
작성자전화	
작성자팩스	
전송여부	미전송 (2021년 7월 21일 현재)
전송일자	

화면 인쇄하기 확인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5.「5. 추가 설문」탭

- 조사표 전송을 완료한 응답자에 한하여 [5. 추가 설문]를 추가로 조사함.
- 추가 조사는 납품단가 반영 실태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버튼을 누르면 설문을 참여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구성되어 있음.
- 추가 설문까지 완료 하시면 경품응모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 함

[4. 조사표 전송 탭 – 웹 화면 캡쳐본]

[5. 추가 설문조사 페이지]

※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 생성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6. 조사표 작성 시 문의사항 발생시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 조사표 작성 담당자가 조사 안내나 조사표 작성에 관련하여 문의할 부분이 생기면 통합상담센터나 QR코드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 가능

03

하도급 거래 설명

1. 하도급거래 종류
2. 하도급거래 사례

1. 하도급거래 종류

- **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 업(業)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 건설 위탁 행위 사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자
5.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등록업자
7.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업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등록업자
9.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사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 경미한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 5백만원 미만 공사
- 접속기, 소켓, 기타 개폐기 보수 및 교환 공사 등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 > (예시)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 (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1. 하도급거래 종류

- **1. 건설위탁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가드레일, 표지판, 방음벽, 밸브, 엘리베이터 등)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레미콘, 아스콘 등**)

  * 레미콘은 **대전, 대구, 세종,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만 적용**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단순 건설자재(시멘트, 자갈, 모래) 제외,골재의 규격, 품질 지정시 적용
-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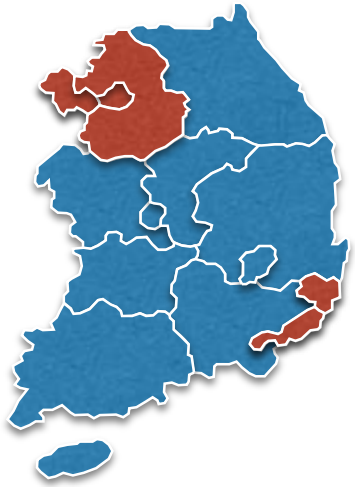

1. 하도급거래 종류

- **2.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판매·수리업자,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 :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

< 제조 위탁 행위 사업자>

1.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2.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3.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4. **건설업자**

< 제조위탁이 아닌 경우 >

- **물품의 제조, 판매, 건설업자 외 다른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극 위탁**
- **업(業)과 관련 없는 위탁(자가소비용 단순구매)**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설비의 제조위탁**

-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등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음

1. 하도급거래 종류

- **2. 제조위탁**

-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재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자)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1. 하도급거래 종류

▪ 3.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지식성과물 :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설계 등 (주로 유형적)
- 역무 :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자동차운수, 건물유지관리, 경비, 광고 편집·현상·녹음 등 (주로 무형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위탁]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작성 위탁
2.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 위탁
3.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위탁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위탁 등

※ 용역위탁은 동일 업종 간의 위탁만을 인정하는 점에서 건설위탁과 유사하나 관련 법에서 엄격한 등록,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역무의 공급 위탁]

1.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가 구조계산, 감리,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탁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동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 보수, 청소를 위탁
4. 경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시설 내 위험방지, 신변보호 활동을 위탁
5. 물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화물 운송, 보관, 포장 활동을 위탁
6.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 보수를 위탁 / 데이터 저장, 검색 등을 위탁
7. 광고를 업으로 하는 자가 판촉, 편집, 조사, 기획 등을 위탁
8. 방송, 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자가 녹음, 촬영, 편집 등을 위탁
9.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업무를 위탁

2. 하도급거래 사례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사례

"사례1. 다음은 하도급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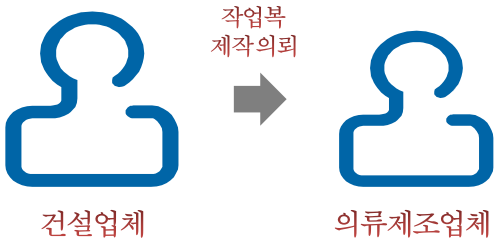

건설업체의 '업'은 작업복 제작이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가 아님!

"사례2. 수급사업자가 무등록 사업자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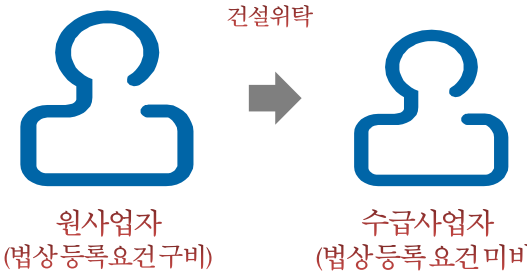

'업에 따른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가 아님!

"사례3. 제조위탁과 단순구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양을 지정 주문하였는지,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였는지?

↓

자가소비용 단순구매나 위탁 받은 목적물을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위탁이 아님!

"사례4.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거래라 할 수 없음.
다만, 수입한 물품을 목적물의 일부로 사용했거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음